<bof>

1. [%1](#1 법인세 신고･납부)(#2 법인세 신고･납부)(#3 Corporate tax declaration and payment)[n]
   1. [%2](#1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3 Corporate tax declaration and payment procedures)[n]
      1. [1](#1 당초신고의 변경)(#2 당초신고의 변경)(#3 Amendment of the initial declaration)[n]
         1. [2](#1 수정신고(국세기본법§45))(#2 수정신고)(#3 Amended declaration)[n]
            1. [3](#1 수정신고 정의)(#2 수정신고의 정의)(#3 Definition of an amended declaration)[n]

{1}(#1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및 §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 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2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및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금(환급세금 포함) 또는 결손금이 사실과 달라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정의합니다.)(#3 If the submitted report and the taxable amount, including taxes (including refund taxes), or the deficit amount stated on the report, differ from the actual facts within the reporting deadline, it shall be defined as an amended report that needs to be filed again.){r4<n>,e5<n>}

* + - * 1. [4](#1 수정신고방법)(#2 수정신고방법)(#3 Amended declaration process)[n]

{1}(#1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2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 신고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3 An amended return can be submitted before the deadline for amendment filing ends, which is before the tax office determines the taxable amount and tax, and issues a notice. Any penalty tax due shall be paid.){r3<n>,r5<n>}

* + - * 1. [5](#1 수정신고 적용시기)(#2 수정신고 적용시기)(#3 Timing for applying amended declarations)[n]

{1}(#1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2 2020.1.1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3 In cases where the post-deadline tax base return is submitted before January 1, 2020, and an amended tax base declaration is subsequently submitted after January 1, 2020, it is still possible to submit the amended declaration.){e3<n>,r4<n>}

* + - * 1. [6](#1 수정신고 사유(국세기본법§45①))(#2 수정신고 사유)(#3 Reasons for amended declarations)[T,e3<n>]

{1}(#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금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금보다 적게 신고되었을 때)(#3 =When the tax base and taxes declared on the tax base return are less than what should be declared according to the law.){n}

{2}(#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금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 받을 세금보다 많게 신고되었을 때)(#3 =When the amount of losses or refundable taxes declared on the tax base return is greater than the losses or taxes to be declared according to the law.){n}

{3}(#1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2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공사부담금 등을 수익과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았을 때)(#3 =When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or construction costs have not been included as income and expenses in the tax adjustment process.){n}

* + - * 1. [7](#1 수정신고 가능 기한)(#2 수정신고 가능 기한)(#3 Amended declaration deadlines)[n]

{1}(#1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2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 신고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3 Amendments are permissible until the deadline for amendment filing ends, which is before the tax office director determines the taxable amount and tax and issues a notification.){e3<n>,r4<n>}

* + - * 1. [8](#1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8))(#2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3 Reduction of penalty taxes upon amended declaration)[T,r3<n>,r6<n>]

{1}(#1 =1개월 이내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2 =1개월 이내는 90%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감 받습니다.)(#3 =When filing an amendment within one month, you will receive a reduction equivalent to 90% of the amount.){n}

{2}(#1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감 받습니다.)(#3 =When filing an amendment between one and three months, you will receive a reduction equivalent to 75% of the amount.){n}

{3}(#1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2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감 받습니다.)(#3 =When filing an amendment between three and six months, you will receive a reduction equivalent to 50% of the amount.){n}

{4}(#1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2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감 받습니다.)(#3 =When filing an amendment between six months and one year, you will receive a reduction equivalent to 30% of the amount.){n}

{5}(#1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2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감 받습니다.)(#3 =When filing an amendment between one year and six months and two years, you will receive a reduction equivalent to 10% of the amount.){n}

{6}(#1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2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것을 알고 미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3 =If the tax office is aware of the tax liability and the taxpayer submits an amended return in advance, no benefit of penalty tax reduction will be granted.){n}

* + - 1. [9](#1 경정청구)(#2 경정청구)(#3 Claim of reassessment)[n]
         1. [10](#1 경정청구 정의)(#2 경정청구의 정의)(#3 Definition of reassessment claim)[n]

{1}(#1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및 §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정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돌려받을 세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3 When a corporation that submitted its tax return within the statutory deadline and a corporation that submitted its tax return after the deadline have overpaid taxes and are entitled to a tax refund.){e11<n>,e12<n>}

* + - * 1. [11](#1 경정청구 사유)(#2 경정청구 사유)(#3 Reasons for reassessment claims)[T,e10<n>,r12<n>,e13<n>]

{1}(#1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2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금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금보다 많을 때입니다.)(#3 =When the declared tax base and taxes exceed what should be declared.){n}

{2}(#1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2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금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금보다 적은 때 입니다.)(#3 =When the reported deficit amount or refundable tax is less than the deficit amount or refundable tax to be reported.){n}

* + - * 1. [12](#1 경정청구 적용시기)(#2 경정청구 적용시기)(#3 Timing of reassessment claims)[n]

{1}(#1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 이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 (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2 2020.1.1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이후 경정 청구 시에도 가능합니다.)(#3 In cases where the post-deadline tax base declaration is submitted before January 1, 2020, and even when a reassessment claim is submitted after January 1, 2020, an reassessment claim is still possible.){e10<n>,e11<n>}

* + - * 1. [13](#1 경정청구 가능 기한)(#2 경정청구 가능 기한)(#3 Deadline for reassessment claims)[n]

[14](#1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경우)(#2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경우)(#3 For the initially declared and amended taxes)[n]

{1}(#1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2015.1.1. 현재 경정청구기간(3년) 미경과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부칙§7)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세금에 대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For the initially declared and amended taxes, a reassessment claim can be made to the tax office within 5 years from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declaration deadline.) {r10<n>,r11<n>}

[15](#1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2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3 When the tax is determined or reassessed)[n]

{1}(#1 결정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2015.1.1. 현재 경정청구기간(3년) 미경과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부칙§7))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세무당국에 의해 세금이 증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For cases where the tax increases due to tax authorities' decisions, reassessment claims can be mad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r10<n>,r11<n>}

[16](#1 기타 사유 발생)(#2 기타 사유 발생)(#3 Occurrence of other reasons)[n]

[17](#1 기타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기한)(#2 기타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기한)(#3 Deadline for reassessment claims in case of other reasons)[n]

{1}(#1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2016.1.1.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1.1. 전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적용)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6.1.1 이전의 세금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3 Reassessment claims can be made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the occurrence of other reasons. However, for taxes before January 1, 2016, reassessment claims can be made within 2 months.){ r10<n>,r11<n>}

[18](#1 기타 사유)(#2 기타 사유)(#3 Other Reasons)[T, r10<n>,r11<n>]

{1}(#1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심판의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세금이 변경 및 확정되었을 때입니다.)(#3 =When taxes are reassessed and finalized due to a court judgment.){n}

{2}(#1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2 =소득이나 기타 물건이 제 3자로의 귀속 결정 등이 있을 때입니다.)(#3 =When income or other property is determined to belong to a third party.){n}

{3}(#1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2 =법이 변경된 경우입니다.)(#3 =When the law is amended.){n}

{4}(#1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이나 다른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2 =경정 등으로 인해 같은 과세 기간의 법인세 외의 세금이 과다납부 되거나 다른 과세기간의 법인세가 과다납부된 경우 입니다.)(#3 =When taxes other than corporate taxes for the same taxable period are overpaid due to reassessment claims or when corporate taxes for a different taxable period are overpaid.){n}

{5}(#1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2 =최초 신고 시 세금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관청의 허가 등이 취소된 때 입니다.)(#3 =When the transaction or government approval that served as the basis for tax calculation in the initial declaration is canceled.){n}

{6}(#1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2 =최초 신고 시 세금의 계산 근거가 된 계약이 취소된 때 입니다.)(#3 =When the contract that served as the basis for tax calculation in the initial declaration is canceled.){n}

{7}(#1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2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입니다.)(#3 =When taxes could not be calculated due to the seizure of accounting books or supporting documents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but the circumstances have since ceased.){n}

* + 1. [19](#1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2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3 Disadvantages of insincere declaration and insincere payment)[n]
       1. [21](#1 가산세 부담(국세기본법§47∼§47의5))(#2 가산세 부담)(#3 Additional tax)[T,r24<n>]
          1. [22](#1 신고불성실 가산세)(#2 신고불성실 가산세)(#3 Additional tax for insincere declaration)[n]

{1}(#1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 국제거래 60%))(#2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과합니다.)(#3 When tax declarations are lower than the amount required by tax laws, insincere declaration is categorized into deceptive declaration and simple declaration errors. Higher rate of penalty tax is imposed on deceptive declaration.){n}

* + - * 1. [23](#1 납부불성실 가산세)(#2 납부불성실 가산세)(#3 Additional tax for an insincere payment)[n]

{1}(#1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2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2022.2.15.) 전의 기간분은 0.025%))(#2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22%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3 A penalty tax is imposed at a rate of 0.022% per day for the period from the day following the tax declaration and payment deadline until the voluntary payment date or the notification date.){n}

* + - 1. [24](#1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2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 부담)(#3 Additional liability due to disposal of surpluses, etc)[n]
         1. [25](#1 조세범처벌법)(#2 조세범처벌법)(#3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n]

{1}(#1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2 법인이 수익을 누락시키거나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은 물론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When a corporation omits income or falsely accounts for expenses as processing costs, it may not only be subject to penalty taxes but also liable for legal penalties.){r21<n>,r26<n>}

* + - * 1. [26](#1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2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3 Disposal as bonuses or dividends)[n]

{1}(#1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은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2 법인으로부터 이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상여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됩니다. 만약 귀속이 이득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이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3 A person considered to have received benefits from a corporation is required to pay additional income tax as if they had received bonuses or dividends. In cases where the attribution of benefits is unclear,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is presumed to have received the benefits.){ r21<n>,r25<n>}

* + - 1. [27](#1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국기법§81의6))(#2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3 Insincere declarants are subject to tax audits)[n]
         1. [28](#1 전산자료 구축)(#2 전산자료 구축)(#3 Establishment of computer data)[n]

{1}(#1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2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해야 합니다.)(#3 The content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return and its accompanying documents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detailed manufacturing cost statement, etc.) submitted by the taxpayer to the tax office each year must be categorized by each account item and built into electronic data.){r21<n>,r24<n>,r29<n>}

* + - * 1. [29](#1 세무조사 대상 선정)(#2 세무조사 대상 선정)(#3 Tax audit target selection)[n]

{1}(#1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2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3 The National Tax Service evaluates the compliance of all corporations based on computer analysis of this data. Corporations classified as non-compliant due to insincere reporting are selected for tax audits, and detailed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r21<n>,r24<n>,r28<n>}

* + 1. [30](#1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관련예규)(#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관련 법)(#3 Laws related to corporate income tax declaration and payment procedures)[n]
       1. [31](#1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2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3 A lawsuit to cancel a refusal of a reassessmen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supplementary reassessment claim period is illegal)[n]
          1. {1}(#1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2017.11.09.))(#2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위법이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3 Reassessment claims fil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supplementary reassessment claim period are unlawful, and even if the tax authorities reject the reassessment, they cannot be the subject of a lawsuit.){r10<n>,r11<n>}
       2. [32](#1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2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3 Reassessment claim deadline for amended declarations mad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assessment claim period)[n]
          1. {1}(#1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대법원2017두50782, 2017.10.26.))(#2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증액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합니다.)(#3 An amended declaration is an acknowledgment by the taxpayer that they have underreported taxes and are subsequently reporting an increase. Therefore, reassessment claims fil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assessment claim period are illegal.){r13<n>}
       3. [3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2 고유목적을 위한 준비금의 설정률 차이가 발생한 경우 신고 조정하여 차이내역에 대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3 If a difference in the reserve rate occurs in a reserve fund for a specific purpose, it can be adjusted for the difference and be accounted for as expenses)[n]
          1. {1}(#1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PF투자로 발생한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에 대한 예규 변경에서 비롯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위 소득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증가한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4서0864, 2014.06.23.))(#2 청구법인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이익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에 따른 금액은 신고조정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3 Considering that the corporation has no disposable profits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profit being externally distributed, the amount related to the reserve rate difference for the specific-purpose business reserve can be adjusted and accounted for in the declaration.){r10<n>}
       4. [34](#1 대손금 손금산입 경정청구 가능 여부)(#2 대손금 비용처리 경정청구 가능 여부)(#3 Feasibility of a reassessment claim for bad debt)[n]
          1.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법인-400, 2009.5.7.))(#2 채권의 대손은 법인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에는 경정 청구하더라도 채권의 대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 Bad debt recognition for receivables can only be granted if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re met, so even if a reassessment is made after the tax return, bad debt cannot be recognized.){n}
       5. [35](#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2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된 채무면제이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3 Feasibility of a reassessment claim for gain on exemption of debt used for the preservation of losses carried forward)[n]
          1. {1}(#1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익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61, 2007.1.9))(#2 내국법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해당 이익 중 일부를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익으로 세무조정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3 If a domestic corporation has generated profits due to debt relief in a fiscal year and has preserved a portion of those profits in losses carried forward, it is possible not to adjust those debt relief profits as income.){n}
       6. [36](#1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2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3 Feasibility of a reassessment claim for amended declaration amounts)[n]
          1. {1}(#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 조세46019-135, 2003.4.7.))(#2 최초의 세금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기한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Even in the case of an initial tax return followed by an amended declaration, a reassessment claim can be made for the amended declaration amount within the reassessment claim deadline.){r3<n>,r10<n>}
       7. [37](#1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2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해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3 Whether reserve funds can be accounted for as expenses through reassessment claims)[n]
          1. {1}(#1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2184, 2002.12.5.))(#2 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정 등으로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3 If a corporation accounts for reserve funds on the tax adjustment statement, they can be considered as expenses, but if they are not accounted for, they cannot be accounted for as expenses through declaration adjustments.){r10<n>}

<boe>